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50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제220285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건축물의 용도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을 구분하여 신설 (안 제2조)	2

I.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제220285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14.

다. 회 부 일 : 2024. 8.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3. 검토의견

가. 건축물의 용도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을 구분하여 신설(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창고시설</u>	18. <u>창고시설(제18호의2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u>
<u><신설></u>	18의2. <u>생활물류시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생활물류시설)</u>
19. ~ 29. (생략)	19. ~ 29.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을 따로 구분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령」¹⁾은 연면적 1만제곱

1)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생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 별표 1의 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등)

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관리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비 기준(건축물의 단열성능, 설비의 에너지효율, 재료의 불연성능 등)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작업장에서 노동자 등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환기 및 냉·난방설비 등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²⁾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³⁾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확보 측면을 위한 냉·온방설비 등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조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생활물류센터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2023. 9. 7.)

- 생활물류센터는 물건만이 적재되어 있는 창고시설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르며 근무하는 장소이므로, 일하는 사람의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냉·온방 및 환기설비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문 의 처
02)6788-5585